

Ⅲ-8 생활이 곤란할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청촌사무소의 복지담당창구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부록Ⅸ-1 62 페이지)

(1) 민생·아동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 혼자 사는 노인, 노환으로 누워있는 노인, 편부모가족, 장애를 가지고있는 분 등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이외에도 복지사무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에 협력합니다. 또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2) 생활보호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재산) 이나 자기의 능력, 기타 제도 혹은 시책들을 이용하고, 또한 친족한테서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거주지의 복지사무소의 보호과까지 상담하여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생활자금의 대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복지자금이나 긴급원조자금을 대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